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9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김성환·김한규

한준호 • 민병덕 • 정진욱

김준형 • 민형배 • 문대림

이수진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34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의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 년에서 3년으로 강화, 「산업표준화법」 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 다.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안 제23조).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속임수·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15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환경표지 등의 유효기간) ①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은 3년 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인정되면 해당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인증기준이 동일한 경우
- 2. 기존 인증제품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신청된 인증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종전의 제3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종전의 제3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4조 나 제35조"를 각각 "제35조나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u>등)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5</u>
	항제5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
	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갈
	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
	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u>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u>

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 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 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 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을 징수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 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 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한다.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하는 제품의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위반 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의2(환경표지 등의 유효기 간) ①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제20 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 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인정되면 해당 환 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u>수 있다.</u>	이 경우	・ユ	연장기간은
<u>3</u> 년으로	한다.		

- 1.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과 인증 당시 인증기준이동일한 경우
- 2. 기존 인증제품과 유효기간의연장이 신청된 인증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1)	_
	_
	_
	_
	_

- 1. (현행과 같음)
-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2. ~ 5.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 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 다.

<신 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한 경우

-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 등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 제1 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호 및 제4호----.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 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 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 를 한 자
 -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벌칙)	

- 1. ~ 4의2. (생 략)
- 5.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6.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벌칙) (생 략)
- 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 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1. ~ 4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u>제36조</u> (벌칙) (현행 제35조와 같
<u>о</u>)
<u>제37조</u> (양벌규정) ①
제35조나 제36조
②
제35조나 제36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u>제37조</u>(과태료) ① ~ ③ (생 략) <u>전</u>

<u>세38조</u> (과태료) ① ~ ③ (현행 제
37조와 같음)